

평생교육원 시행세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세칙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입학·전형

제2조 (지원자격) 각 과정 공통으로 침례 받은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고(학점은행 제외)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전문과정: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 소지자
- ② 목회신학원: 여 교역자를 희망하는 직분자 또는 신학 수업을 희망하는 남녀 성도
- ③ 학점은행과정: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 소지자
- ④ 최고영적지도자과정: 교회 안수집사, 평신도지도자 및 이에 준하는 성도

제3조 (지원서류) 각 과정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

- ① <삭제>
- ② 전문과정:
 1. 입학원서(본교 소정양식)
 2. 목회자 추천서(본교 소정양식) 1통
 3. 침례증서 사본(또는 증명서, 원장이 인정하는 확인서)
 4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중퇴자의 경우는 제적증명서), 성적증명서(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제외) 각 1통
 5. 사진 2매
- ③ 목회신학원:
 1. 입학원서(본교 소정양식)
 2. 목회자 추천서(본교 소정양식) 1통
 3. 침례증서 사본(또는 증명서, 원장이 인정하는 확인서)
 4. 사진 2매
- ④ 학점은행과정:
 1. 입학원서(본교 소정양식)
 2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중퇴자의 경우는 제적증명서), 성적증명서(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제외) 각 1통
 3. <삭제>
 4. 사진 2매
- ⑤ 최고영적지도자과정:
 1. 입학원서(본교 소정양식)
 2. 사진 1매

제4조 (전형방법 및 배점) 전문과정과 목회신학원의 전형은 원장이 주관하여 시행한다.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전형을 시행하며, 필요할 경우 필답고사를 부과하거나 간이시험을 부가할 수 있다.

- ① 서류전형
- ② 면접전형

제3장 편입학

제5조 (편입학)

- ① 전 과정 편입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시행하되,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.
 - 1. 목회신학원 수료자가 전문과정에 입학할 경우:
3학기 45학점을 인정
 - 2. <삭제>
 - 3. 전문학사가 있는 자가 전문과정에 입학할 경우:
2학기 30학점을 인정
 - 4. 대학 중퇴자가 전문과정에 입학할 경우:
대학 및 신학교 중퇴자일 경우만 이수한 과목에 따라 학기 및 학점을 최대 45학점까지 인정

제4장 수강신청

제6조 (수강 신청 학점)

- ① <삭제>
- ② 전문과정: 한 학기 최대 24학점, 1년 최대 42학점
(타 과정 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.)
- ③ 목회신학원: 한 학기 최소 3학점, 최대 9학점
- ④ 학점은행과정: 한 학기 최대 24학점, 1년 최대 42학점

제7조 (수강취소 기간)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.

제5장 이수과목

제8조 (이수학점) 각 과정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

- ① <삭제>
- ② 전문과정
 - 1. 전공필수: 27학점
 - 2. 전공선택: 33학점
 - 3. 전공선택 + 교양: 30학점 **계 90학점**
- ③ 목회신학원

1. 기초과목: 18학점
2. 전공필수: 18학점
3. 전공선택: 18학점

계 54학점

제6장 수료

제9조 (수료사정)

- ① 수료 사정은 당연직위원 중 위원장의 주관 하에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수료일 전에 문서로 시행한다.
- ② 수료사정까지 수료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료를 유보하고,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③ 수료사정의 결과는 수료일 2주전에 원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. 단, 학교의 사정에 의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 (수료요건)

- ① 본원의 수료자는 아래의 조건을 이수한 자로 하고 수료식에 참가케 한다.
 1. 전문과정: 6학기 이상 등록(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4학기 이상)
90학점 이상 이수(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60학점 이상 이수)
베뢰아아카데미 2학기 이상 등록
(단, 5학기 90학점 이상 이수 또는 신학사 학위 취득 시 조기 수료 신청 가능, 베뢰아아카데미 2학기 이상 등록)
 2. 목회신학원: 6학기 이상 등록, 신학 54학점 이상 이수
 3. 최고영적지도자과정: 2학기 이상 등록
- ② 필수과목과 기초과목의 과락 된 성적은 반드시 재수강하여 이수해야만 수료대상자가 된다.
- ③ 중복 수강 시 고득점 학점을 인정한다.

제11조 (수료식) 본원의 수료식은 본교의 졸업일자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.

제7장 제적·수료취소

제12조 (제적) 본원의 재학 및 휴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할 수 있다.

- ① 교육 과정의 개설 목적 및 대상자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② 조건부 입학자의 입학 이후 입학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자
- ③ 본원 행정 및 수업에 방해되어 지속적인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13조 (수료 취소) 본원의 과정을 수료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정수료를 취소 할 수 있다.

- ①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교육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
- ② 조건부 수료자의 수료 이후 수료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자
- ③ 본원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

제8장 시행세칙 개정

제14조 (개정)

- ① 본 세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개정된 세칙의 효력은 원장의 재가 직후부터 발생한다.
- ③ 세칙의 개정 시기와 횟수는 매 학기말에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본원의 사정에 의해 그 시기와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.

제9장 보칙

제15조 (준용) 본 세칙에 있지 않은 사항은 베리아국제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세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세칙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세칙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세칙은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세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세칙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0. 이 세칙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1. 이 세칙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